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물산업의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1명(연구관 1명),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리 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시행체계 강화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섬진강수계의 수재해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중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2월 23일까지 연장하며, 사업장 배출영향 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직렬을 연구직에서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8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3.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연구직”을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3 중 총계 “630”을 “632”로 하고, 일반직 계 “624”를 “62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0”을 “59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865”를 “1,8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65”를 “1,86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1”을 “2”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6”을 “5”로, 3급 또는 4급 이하 “1,835”를 “1,830”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0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5급 이하	3

6. 제60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환경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 기관 정원 18명(5급 2명, 6급 8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원장) ① (생 략)	제16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u>연구직</u> 으로 보한다.	② ----- - <u>일반직 또는 연구직</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한시정원) ① 통합환경관 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제60조(한시정원) ① ----- ----- ----- ----- <u>2024년 12월 31일</u> ----- -----.
②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 병 방역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 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5 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	② ----- ----- ----- ----- <u>2023년 2월 28일</u> ----- ----- ----- -----.

다.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④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⑤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 설>

--.

③ -----

2024년 12월 31일-----

--.

④ -----

----- 2024년 12월 31일-----

-----.

⑤ -----

2024년 12월 31일-----

-----.

⑥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u>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 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 의 소속기관에 둔다.</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0</u>	<u>632</u>	+2
•	•	•	
•	•	•	
일반직 계	<u>624</u>	<u>626</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0</u>	<u>592</u>	+2
•	•	•	
•	•	•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865</u>	<u>1,860</u>	-5
일반직 계	<u>1,865</u>	<u>1,860</u>	-5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u>1</u>	<u>2</u>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u>6</u>	<u>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35</u>	<u>1,830</u>	-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